

#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45
------	-----

발의일시 : 2007. 9. 21  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## 1. 제안이유

-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중요시설 이전 및 신설사항 반영(3조2항제5호)

- 타 지역으로 이전한 “계명정보통신학교장”을 신설된 “충주구치소장”으로 대체

### 나. 현실에 적합하게 직제조정(제3조제5항제4호, 5호)

- 실무협의회의 작전담당간사를 “육군 제3105부대 2대대 작전장교”에서 “동원장교”로 예비군담당간사를 “시기동대장”에서 “육군제3105부대 2대대 동원장교”로 조정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

### 나. 예산소요 전망 : 해당사항 없음

### 다.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충주시 조례 제 호

## **충주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의 “계명정보통신학교장”을 “충주구치소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5항제4호의 “작전장교”를 “동원장교”로 한다.

제3조제5항제5호의 “시기동대장”을 “육군3105부대 2대대 동원장교”로 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○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협의회구성 및 운영)①(생략)</p> <p>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<u>5. 계명정보통신학교장</u></p> <p>6.~10.(생략)</p> <p>③~④(생략)</p> <p>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해당 각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</p> <p>1.~3(생략)</p> <p>4. 작전담당간사 : 육군 제3105부대 2대대 <u>작전장교</u></p> <p>가.~나.(생략)</p> <p>5. 예비군담당 간사 : <u>충주시기동대장</u></p> <p>가.~나.(생략)</p>	<p>제3조(협의회구성 및 운영)- - - - -</p> <p>②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<u>5. 충주구치소장</u></p> <p>- - - - -</p> <p>4. - - - - - 동 <u>원장교</u></p> <p>- - - - -</p> <p>5. - - - : <u>육군 제3105부대 2대대 동원장교</u></p> <p>- - - - -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통합방위법

**第5條 (地域統合防衛協議會)** ①特別市長·廣域市長·道知事(이하 "市·道知事"라 한다) 소속하에 特別市·廣域市·道統合防衛協議會(이하 "市·道協議會"라 한다)를 두되, 그 議長은 市·道知事が 된다.

②市長·郡守·區廳長 소속하에 市·郡·區統合防衛協議會를 두고, 그 議長은 市長·郡守·區廳長이 된다.

③시·도협의회와 시·군·구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협의회에 한다. <개정 2006.3.3>

1.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(이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
2. 통합방위 대비책

3.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
④地域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.

**第9條 (統合防衛支援本部)** ①市·道知事 소속하에 市·道統合防衛支援本部를, 市長·郡守·區廳長·邑長·面長·洞長 소속하에 市·郡·區·邑·面·洞統合防衛支援本部를 둔다.

②市·道統合防衛支援本部와 市·郡·區·邑·面·洞統合防衛支援本部(이하 "각 統合防衛支援本部"라 한다)는 管轄地域별로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한다.

1. 統合防衛作戰 및 訓練에 대한 支援計劃의 수립·施行

2. 統合防衛綜合狀況室의 設置·운영

3. 國家防衛要素의 육성·지원

4. 統合防衛 脆弱地의 住民申告體制 확립

5. 기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하는 사항

③각 統合防衛支援本部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.